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0. 11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11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2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4.10.28)상정.채택

2. 제안설명요지(장일룡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금융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, 사고발생시 행정기관에 일정부분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추세이므로
-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을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.
- 따라서 주민등록 관장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업무 수행중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.

나. 주요골자

-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지정(안 제2조)
 -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고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대직자
- 보험의 가입 및 금액(안 제3조)
 -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

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.

○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(안 제5조)

- 구청장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함.
-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
3. 관련법규

- 주민등록법 제20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2004. 3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인한 피해발생에 대비 하기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-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내용에 문제가 없으며 제3조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, 최근 주민등록사고사례와 본 제정안과 유사한 인감사고업무 담당공무원 보험, 공제등의 가입조례가 정한 가입금액이 1억이상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정 금액이라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